

2010. 11.12. 제정
2012. 09. 12 개정
2015. 08. 06 개정
2015. 09. 01 개정
2015. 10. 01 개정
2015. 12. 04 개정
2016. 06. 07 개정
2016. 08. 31 개정
2018. 09.21.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-약관-105호 (2018.09.05)

「e-플러스 적금」 특약

제 1 조 약관의 적용

e-플러스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 과 『적립식 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가입대상 및 예금과목

-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이하 "고객"이라고 함)으로 1인 2계좌만 가입가능하며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콜센터, 영업점 태블릿 브랜치 또는 이동식KEB하나은행(포터블)을 활용한 가입만 가능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과목은 상호부금으로 합니다.

제 3 조 약정기간 및 최저가입금액

- ①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1년, 2년 및 3년입니다.
-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가입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.

제 4 조 적립방법

- ① 고객은 이 예금의 저축한도(금액과 횟수)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- ② 고객은 이 예금의 계약기간의 2/3 경과 시부터 만기직전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적립금액 합계는 그 이전 적립한 금액의 1/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③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, 1회 최저 1천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100만원 이내로 합니다.

제 5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 일부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②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6조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6 조 우대금리

- ① 이 예금을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스마트폰뱅킹 신규가입 시 연0.1% 우대합니다
-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KEB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KEB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0.1% 우대합니다.
- ③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멤버스 앱으로 1회 이상 추가 로그인 기록 보유 시 연0.1% 우대합니다.
- ④ 당행 첫거래 고객^(주1)에게 연 0.5% 우대합니다.
- ⑤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^(주2)에 가입 시 연0.4% 우대합니다.
- ⑥ 추석 또는 설 연휴기간^(주2)을 제외한 은행 비영업일에 가입 시 연0.2% 우대합니다.

(주1) 이 예금가입 전월 말 기준 KEB 하나은행 은행계정 예금계좌(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포함)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

(주2) 추석 또는 설날 공휴일과 당해 공휴일에 연속된 은행 비영업일 포함